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2013. 9. 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를 추천한다.

제3조(구성 및 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2.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대학평의회 의장은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1항의 각 구성단위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운영 및 임기)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회에 두며, 비상설 기구로 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을 마친 날까지로 한다.

제5조(의장 등) ①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개방임원의 추천) 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중인 개방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 인원의 2배수, 추천감사의 경우 1배수를 법인에 추천한다.

제7조(개방임원의 자격) ① 개방임원은 법인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에 추천될 수 없다.

1. 법령,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2. 추천일 현재 법인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개방임원으로 추천되어 재직 중인 사람은 예외로 한다.
3. 현재 재직 중인 법인 이사 또는 감사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제8조(회의 소집) 법인 또는 대학평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추천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

제11조(비밀유지) 추천위원 및 간사는 추천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법인 정관 및 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2013. 9. 6.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